

보도관계 분쟁과 언론중재제도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기본법」('81. 1. 1 제정·시행)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으로 대체·시행된 87년 이후, 보도관계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88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정정보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만 보아도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보도관계 분쟁은 절차상 피해당사자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중재신청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바로 분쟁이 해결되는 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분쟁사례는 중재신청건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보도관계로 인한 분쟁이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첫째로 언론매체의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된 이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만큼 언론종사자 또한 그 수차 크게 늘어난데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87년 이후부터 94년 말까지 정기간행물은 그 총수가 약 4배(2,236개지→8,724개지)로 팽창하였다.

이와 정비례해서 언론종사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언론연구원 조사(93년 말 현재)에 따르면 언론종사자 총수는 36,494명으로, 10년 남짓한 사이에 언론종사자는 2배가 증가되었다.

거기에 언론사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칫 상업주의적 기업심리까지 작용, 과당경쟁이 벌어지기 쉽다.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는 보도(특종), 독자나 시청자를 독점하기 위한 경쟁 와중에서 「졸속」, 「과장」, 「왜곡」, 「단정적」, 「흥미위주」,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쉽다. 그렇게 될 경우 언론은 정도를 벗어나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뿐더러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파멸적 타격을 주기 쉽다.

이러한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측이 정정보도나 반론의 게재를 요구했을 때,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여 뚜렷이 잘못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일지언정 그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리 없음에도 아직도 일부 언론사는 피해당한 측의 불만수용에 인색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언론중재 과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언론사로 보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보나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어느 경우는 언론사가, 어느 경우는 피해를 당한 측이 한치의 양보도 안해 「불성립」으로 끝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중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재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우 완만하지만 중재에 합의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긴 하나 정정보도도에 합의는 했어도 정정보도문이 문제된 기사보다 지면할애 양에 있어서 못하다는 점등 불만의 소지는 많이 남아 있다.

문민정부 발족 이후 언론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보도관계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오랜 언론의 역사를 지닌 구미민주국가에서도 보도관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로운 언론의 신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라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창출에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신문옴부즈맨과 신문평의회 제도는 자율적인 민간기구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아울러 언론윤리향상을 위하여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신문옴부즈맨이나 신문평의회는 일반의 인권구제와 언론윤리향상을 위해 강력한 직권을 행사, 옴부즈맨의 의견서나 평의회의 평결 내용이 즉각 관련신문에 게재되는 점, 직권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은 언론사들의 협정에 따라 평의회의 평결에 절대복종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언론전담판사와 특별재판부를 설치, 보도관계 분쟁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크게 주목할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반론권이 최대한 활용되어 잘못된 언론보도는 물론 일방적인 보도, 과장된 보도 등 보도관련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에 대해 즉각 반론제기가 가능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도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비교되는 점이다.

영국의 신문평의회가 신문의 자유를 옹호하고 언론종사자들로 하여금 공공책임과 공공봉사의 관념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40 여년의 운영결과는 설립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해체되어 PCC(언론불만처리위원회)로 바뀌어 어졌으나 PCC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규제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 반면 이웃 일본의 경우 순전히 언론사간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강령」만을 바탕으로 바른 언론 육성,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구미 각국의 자율규제제도와는 매우 특이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설립 10 여년이 지난 이제 일반에 널리 알려졌고 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발족 당시보다 언론사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긍정적인 면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합의 결렬시의 강제중재권을 부여하는 문제, 직권중재제도의 도입문제가 전문가들에 의해 빈번히 거론되고 있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표현 대신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바꾸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어 언론중재제도의 보완 강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민주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KBS 해설주간, KBS 연수원장 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